

10.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559호 1997. 12. 3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을 단위로 하여 부과하도록 하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휴토지로서 토지가격이 정상지가상승율이상으로 상승한 토지에 대하여는 1년을 단위로 상정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최근 토지가격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1997년도분 상정과정에 있어서도 1996년도의 경우와 같이 가장 높은 정상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상정과정 대상토지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의2나목 본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16조제5항 후단중 “직할시”를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1996년”을 “1997년”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으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예정결정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

주택회보